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584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, 문화체육관광부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
- 3.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- 4.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

- 제7조(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) | 제7조(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)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 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 다.
 - 1.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 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 항
 - 3.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 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 - 4.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 항
 - 5.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 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 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- 1.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 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 항
- 3.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 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- 4.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 항
- 5.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 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 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

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 산할 수 있다.